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5. 26.(화)

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 영업자에게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알림 체계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를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신속알림’ 절차 >

공무원	영업자	공무원	영업자
검체 수거, 전자수거증 작성·발급 * 영업자 정보수신 여부 확인 * 알림문자(카카오톡) 발송	▶**전자수거증(전자메일) 확인**	▶ 검사 결과 입력, 전자성적서 작성·발급 * 알림문자(카카오톡) 발송	▶**전자수거증(전자메일) 확인**

이번 ‘온라인 신속알림’은 그간 **우편 위주**로 **진행**되던 **검사결과 통보**를 **온라인 통보 방식**으로 **개선***하여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행]**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문서로 통보하고 ‘적합’인 경우에는 **영업자 요청 시 제공**(약 10일 소요)
[개선] 수거·검사 **결과**를 **즉시 영업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알림 문자 발송**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시작**하여 운영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쳤고, 이번에 **전국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올해 7월 이후**에는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이번 검사 결과 신속 알림을 통해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작업장과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부적합 발생 시 **즉시 출고·유통 차단, 신속한 회수 조치**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검사 결과 신속통보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받을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에 이어 다른 식품에도 신속알림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영이 (043-719-3240)
		담당자	사무관	설찬구 (043-719-3253)
협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책임자	과 장	기용기 (043-719-2252)
		담당자	사무관	이미순 (043-719-4052)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심, 100년 뒤에갈 안심기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